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(신·구조문대비표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6조의2, 제24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, 제2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,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"환특법"이라 한다)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「관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의2까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 제1조의3,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인용조항 수정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.	
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
5. “신용등급”이란 금융위원회로부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6항 각 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(이하 “신용평가업자”라 한다)가 기업어음·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.	5. ---------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---------- ---------- 제9조제26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인용조항 수정
제3조(담보제공 대상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.	제3조(담보제공 대상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
1.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	1. 「관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또는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환특법”이라 한다) ----------	

경과되지 아니한 자	----------.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	
7.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「관세법 시행령」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, 자산, 영업이익,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7. ----------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52조제3호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가. 최근 1년 이내 「어음법」이나「수표법」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	가. ----------이나 「수표법」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나. ~ 다. (생 략)	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	
라.「관세법 시행규칙」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	라.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제4호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마. (생 략)	마. 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	② 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고시에서 담보제공 생략의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관세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	---------- 관세 등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 관세 등---------- ----------.	
제4조(담보제공 생략대상) ① (생 략)	제4조(담보제공 생략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「관세법 시행규칙」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	② ---------- ----------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제5호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공인받거나 「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3호------- ----------	○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근거 고시 변경

아니할 수 있다.	----------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
제5조(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) 제3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	제5조(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) ----------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·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	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	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
5. 법 그 밖의 법률·조약·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, 징수기간의 연장	5. 법 또는 그 밖의 법률----------	○ 문장 정비

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	----------	
제7조(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방법 등) ① 세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나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는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.	제7조(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방법 등) ① ----------	
1. 사업자단위로 신청한 경우 : 신청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실확인	1. ---------- 경우: 신청한 ---------- 사실 확인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2. 법인단위로 신청한 경우 : 신청한 법인을 기준으로 사실확인	2. ---------- 경우: 신청한 ---------- 사실 확인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②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	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하는 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	○ 문장 정비

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고,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	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. 다만,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
제8조(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) ① 제6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(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)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8조(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) ① ----------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(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)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(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○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지 세관 확대

제9조(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)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30일이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	제9조(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경과 후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
③ 세관장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2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	③ ----------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5조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
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후 30일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	⑤ ---------- ----------30일 이내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제12조(담보제공의 범위) ① (생 략)	제12조(담보제공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② ---------- 제1항제 1호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 ---------- ----------.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⑤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관세청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○ 납부기한 연장(분할납부) 승인 시 담보의 제공 생략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
제14조(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) ① (생 략)	제14조(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사용승인이 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으로 담보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각종 세금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2.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.	2. ---------- ----------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	
나. 제12조제1항제2호나 제8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	나. ---------- ----------	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신고건에 대한 제세가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. (생 략) 제17조(담보의 변경) ① ~ ③ (생 략)	---------- 각종 세금이 ---------- 다. (현행과 같음) 제17조(담보의 변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
④ 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담보대체통지를 하여야 하며,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전송(Fax)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 ---------- 팩스---------- ----------.	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1. 개별담보 :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	1. 개별담보: 해당 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2. 포괄담보 :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	2. 포괄담보: 해당 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⑤ (생 략) 제18조(담보의 해제) ① ~ ③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 제18조(담보의 해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
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 1.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관계 관서에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 :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 2.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: 금전을 납세자에게 지급	④ ----------. 1. ---------- -- 경우: 저당권 ---------- 2. ---------- 경우: 금전을 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⑤ (생 략) 제20조(담보의 관세충당 등)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	⑤ (현행과 같음) 제20조(담보의 관세충당 등) ① ---------- 별지 제9호서식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.	---------- ----------.	
② 세관장은 납세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,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관세 등에 충당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	
1. 국채·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, 토지,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,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:「국세징수법」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	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경우: 「국세징수법」----------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2.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인 경우 :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	2. ---------- - 경우: 그 ---------- ---------- --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

제22조(임시개청)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담보제공, 담보해제,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무원복무규정」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처리업무의 종류, 신청시간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 임시개청 신청(통보)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	제22조(임시개청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---------- 근무시간 내에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인용 법령 명 수정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② 동일한 신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담보건을 1건으로 하여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여 임시개청수수료를 부과한다.	② ---------- -- 담보 건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제26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	제26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2022년 ---- --------- 매 3년----------	○ 재검토기한 재설정

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	